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671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2

1. 교육세법 개정 ····· 2

가. 개요 ····· 2

나.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인 유가증권의 ‘수익금액’ 관련 정의 개정
(박수영의원안, 최은석의원안(2), 윤영석의원안) ····· 8

Ⅰ. 개요

1.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67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은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0. 22.

(3) 회 부 일 : 2025. 10.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세법령은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파생상품등 및 외환거래 간에는 손익통산을 인정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유가증권 거래에 대하여는 손익통산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유가증권 이익보다 과다하게 교육세가 과세되는 등 담세력과 괴리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금융 고유의 위험회피(Hedge) 거래 역량을 저해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산정 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등 및 외환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과세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교육세법 개정

가. 개요

□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금융 및 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개별소비세액 일부(담배·프로판·천연가스·유연탄 제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액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부가세(附加稅, surtax) 방식의 목적세임.[1)]

□ 교육세법의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음. 부가가치세의 도입 이전 금융기관의 수익금액에 영업세로서 1%가 과세되었으나, 1977년 부가가치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영업세는 폐지되었으며, 금융 보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 되었음. 이후 1981년 '교육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5년 한시세의 목적세율로서 교육세가 도입되었음.[2)] 이후 1991년 방위세 등이 폐지되며 교육세의 과세대상은 확대되었고 동 세금은 1992년부터 영구세로 전환되었음.

1) 2025 대한민국 조세, 국회예산정책처

2) 영업세를 통한 과세 당시에는 수익금액의 1%를 영업세로 납부하였으나 교육세가 도입되면서 세율이 0.5%로 인하되었음.

[교육세법 개정 연혁]

연도	제·개정 내용
‘49~’76년	▪ **부가가치세 도입 전**까지 **금융기관에 영업세**(수익금액의 1%) **부과**
‘77년	▪ **부가가치세가 신설**되면서 **영업세 폐지** -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81년	▪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80.7.30.)”의 일환으로 **교육세 도입** (금융기관은 외형에 대한 과세인 영업세 대신 교육세 부과) * (세율) 영업세는 수익금액의 1%를 납부케하였으나 교육세는 세율을 0.5%로 인하
‘91년	▪ 방위세 폐지 등 여건변화에 따라 교육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면서 한시세를 **영구세로 전환**
'95년	▪ '93년 교통세법 신설에 따라 교통세 과세 대상을 교육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
‘08년	▪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추가**
'14년	▪ 개별소비세 과세품목 신설(유연탄, 담배) 및 해당품목 교육세 과세 제외
‘15년	▪ **과세기간을 분기에서 연간으로 변경**하고, **중간예납제도 신설**
‘16년	▪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추가**
'19년	▪ 맥주('19년 이전 종가세 72%) 종량세 전환에 따른 교육세율 정비 - 교육세율 30% 적용 주류: 주세율 70% 이상 → 맥주, 증류주류, 기타 주류
‘23년	▪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추가**

자료: 기획재정부

□ 교육세 징수현황을 보면, 2024년 총 5조 3,738억원이 징수되어 전체 국세대비 1.6%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2020년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및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변동 등에 따라 증감세가 반복되고 있으며, 국세 대비 교육세의 비중은 2020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부터 차례로 1.5%, 1.6%로 증가하였음.

[최근 교육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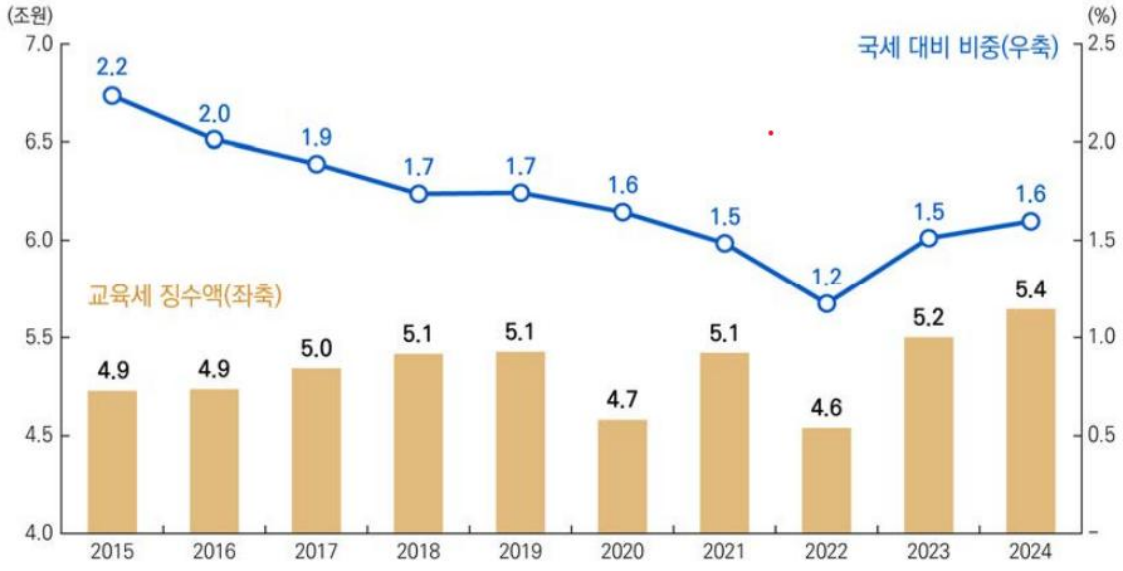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금융·보험업분의 교육세가 전체 교육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은 2020년 총 1조 1,381억원이 징수되어 전체 교육세분 4조 6,937억원 중 24.2%를 차지하였으나, 2024년 총 1조 9,947억원이 징수되어 전체 교육세액 5조 3,738억원 중 37.1%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최근 5년 교육세 과세표준별 징수현황]

(단위:억원)

신고년도		’20	’21	’22	’23	’24
국세분	▪ 금융·보험업분	11,381	11,752	12,527	17,504	19,947
	▪ 소비세분	4,403	4,349	4,044	4,501	4,622
	▪ 주 세 분	7,333	6,083	8,649	8,218	7,519
	▪ 교통세분	20,401	24,963	16,692	16,272	16,557
수 입 분		3,409	3,882	4,523	5,011	5,086
지방세분		10	10	9	10	7
합 계		46,937	51,039	46,444	51,516	53,738

자료 : 국세통계포털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률에 따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4], 지방재정교육교부금[5]에 배분됨. 2025년 예산 기준 교육세 6조 중 1.7조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2.2조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2.2조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으로 전입됨.

---

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교육세 배분 현황]

(단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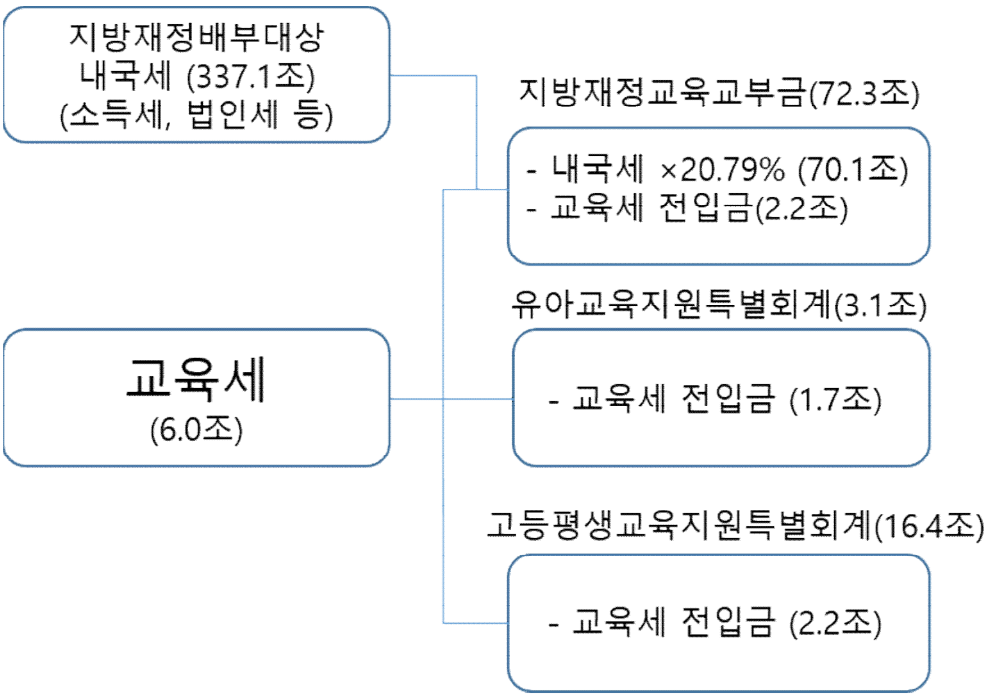

주1: 2025년도 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현행「교육세법」의 과세표준은 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②「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③「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④「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이며, 교육세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됨. 그 중,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서 동 법 및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교육세 과세표준 중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정의]

구분		법률에서 규정된 과세표준	시행령에서 규정된 과세표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포함되는 것)	① 이자 ② 배당금 ③ 수수료 ④ 보증료 ⑤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1)] ⑥ 보험료[2)] 1)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2) 보험계약의 만기·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 공제	① 수입할인료 ②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③ 신탁보수 ④ 대여료 ⑤ 파생결합증권, 증권, 파생상품의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 외환의 매매손익 ⑥ 수입임대료 ⑦ 고정자산처분익 ⑧ 자산의 평가[1)]에서 발생한 이익 ⑨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1) 「법인세법 시행령」§75④
	(포함되지 않는 것)		①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②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③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④서민금융법 제2조제3호에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⑤ ~ ⑫ (이하 생략)

나.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인 유가증권의 '수익금액' 관련 정의 개정(박수영의원안, 최은석의원안(2), 윤영석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과세표준과 세율 (§57의2)

<table>
<tr><th>호별</th><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td>1</td><td>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td><td>1천분의 5</td></tr>
<tr><td>2</td><td>「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td><td>100분의 30[3]</td></tr>
<tr><td>3</td><td>「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td><td>100분의 15</td></tr>
<tr><td>4</td><td>「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td><td>100분의 10 [4]</td></tr>
</table>

</td><td>□ 수익금액에 대한 정의 개정

<table>
<tr><th>호별</th><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td>1</td><td>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1]</td><td>(윤영석의원안) 1천분의 5
과세표준 1조원 초과시: 50억원 + 1조원 초과 금액 1천분의 10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5 단일세율 적용 및 해당 수익금액 과세표준 미산입</td></tr>
<tr><td>2</td><td>「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td><td>100분의 30[3]</td></tr>
<tr><td>3</td><td>「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td><td>100분의 15</td></tr>
<tr><td>4</td><td>「주세법」에</td><td>100분의 10 [4]</td></tr>
</table>

</td></tr>
</table>

현 행	개정안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1)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박수영의원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상환거래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 (최은석의원안(1)):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 파생상품, 외환의 거래로 인한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 (최은석의원안(2)): 「외부감사법」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중 「서민금융법」 등의 일부 수익 등을 제외 (윤영석의원안): 수수료(「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수익, 연회비 수익, 카드 고객의 혜택 제공을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할인, 마일리지 비용 및 제휴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료 등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 라목·바목 및 아목의 물품: 100분의 15	3) 현행과 같음
4)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주세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증류주류,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의 주류(같은 목 단서 주류 제외) : 100분의 30	4)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 <삭 제> : 100분의 30

* 박수영의원안 2025. 10. 1 발의(의안번호 13420), 최은석의원안 2025. 10. 22. 발의(의안번호 13671), 최은석의원안 2025.10.23. 발의(의안번호 13677), 윤영석의원안 2025 10.27. 발의(의안번호 13728)

□ 개정안은 현재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수익금액)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박수영의원안은 현행 수익금액의 정의 중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을 유가증권의 '매각·상환거래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으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최은석의원안(1)[6]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을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한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파생결합증권,[7] 증권,[8] 파생상품[9], 외환의 거래로 인한 손익을 통산

---

6) 논의의 편의를 위해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671)를 최은석의원안(1)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677)은 최은석의원안(2)로 지칭함.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4.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4.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후의 순이익을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려는 것이고,

최은석의원안(2)는 수익금액의 정의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의 회계처리기준[10]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정의하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상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11]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12]에 따

---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1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다.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라.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
마.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종합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바.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지원
사.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아.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이

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려는 것이고,

윤영석의원안은 수익금액의 정의 중 수수료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수익, 연회비 수익, 카드 고객의 혜택 제공을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할인, 마일리지 비용 및 제휴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수익금액 중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범주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

현행	박수영의원안	최은석의원안(1)	최은석의원안(2)	윤영석의원안
수익금액이란	수익금액이란	수익금액이란	수익금액이란 수익금액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서,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상환거래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

하 "보상금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현행	박수영의원안	최은석의원안(1)	최은석의원안(2)	윤영석의원안
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발생하는 손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통산한 순손익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외환의 거래로 인한 손익을 통산(通算)한 후의 순이익	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수익, 연회비 수익, 카드 고객의 혜택 제공을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할인, 마일리지 비용 및 제휴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보험료,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아목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에 따	

현행	박수영의원안	최은석의원안(1)	최은석의원안(2)	윤영석의원안
			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제외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현행법은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수익금액으로 규정하며 개별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임.[13)]

1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통산)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7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에서 발생한 이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개정안은 금융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내 ①-1.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만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현행 규정을 유가증권의 매각·상환거래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으로 개정하고, ①-2. 파생결합증권, 증권,[14] 파생상품, 외환의 거래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손익을 금융 ·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며,

②-1. 수익금액의 정의 내 수수료 중 신용카드업자의 수수료는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②-2. 서민금융법상 발생하는 일부 수익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③ 수익금액의 정의를 외부감사법의 회계처리기준(IFRS)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구분하여 검토

---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법」(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라 한다)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 이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나.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업무로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대출·투자 또는 보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①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한 손익 통산 후의 순손익으로 과세표준 변경 등)

[개정안에 따른 과세표준 정의 변경]

구분		법률에서 규정된 과세표준	시행령에서 규정된 과세표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포함되는 것)	① 이자 ② 배당금 ③ 수수료 ④ 보증료 **⑤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1)]** **⇒ (박수영의원안) 유가증권의 매각 상환거래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 **⇒ (최은석의원안(1))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한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 **(최은석의원안(1)) 파생결합증권, 증권, 파생상품, 외환의 거래의 손익을 통산 ⇐ 한 후의 순이익** ⑥ 보험료[2)] 1)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2) 보험계약의 만기·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 공제	① 수입할인료 ②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③ 신탁보수 ④ 대여료 ⑤ ~~파생결합증권, 증권, 파생상품의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 외환의 매매손익~~ ⑥ 수입임대료 ⑦ 고정자산처분익 ⑧ 자산의 평가[1)]에서 발생한 이익 ⑨ 기타영업수이익 및 영업외수익 1) 「법인세법 시행령」§75④
	(포함되지 않는 것)		①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②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③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④ 서민금융법 제2조제3호에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⑤ ~ ⑫ (이하 생략)

2건의 개정안(박수영의원안, 최은석의원안(1))은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각손실·상환손실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세표준의 정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취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담세능력에 부합하는 과세표준의 설정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 현행법은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설정하고 있음.[15]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보다 손실이 큰 경우에도 교육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16] 이는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만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국내금융회사들이 위험 헷지(hedge)를 외국금융회사에 맡기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17]

추가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의 처분방식에 따라 과세금액이 달라지는 조세의 중립성[18]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그 손

---

15)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의 쟁점과 개선과제", 2023.10. 국회입법조사처

17) 헷지 거래가 매매차익 목적이 아닌 단순 손실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헷지 거래 시 유가증권 거래이익 전체에 대해 교육세가 부과됨에 따라 실제 손익에 비해 과도한 교육세가 부과될 우려가 있어, 국내 금융회사 등은 충분한 자체 헷지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문제로 인해 외국 금융회사에게 헷지를 맡기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금융투자협회 의견

익을 통산하는 구조에서는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담세능력에 비례하지 않는 교육세 부과 사례]

금융·보험업자 A기업, B기업

취득가액 100억원 규모의 유가증권 보유 (취득증권가격 1억원, 총 100주)

시기	유가증권 가격	A 기업			B기업		
		거래규모	매각익	매각손실	거래규모	매각익	매각손실
T_0	0.5억원	50주 판매	-	△25억원	-	-	-
T_1	1억원	-	-	-	50주 판매	-	-
T_2	1.5억원	50주 판매	25억원	-	-	-	-
T_3	1억원	-	-	-	50주 판매	-	-
교육세액 규모		1,250만원			0원		

T_0~T_3 시기가 모두 단일 과세기간일 경우, 금융 보험업자 A,B의 경제적 이익은 동일하나 (순익 0원), 금융 보험업자 A는 1,250만원의 교육세가 부과되는 한편 금융보험업자 B는 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교육세의 과세표준 중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을 '유가증권의 매각·상환거래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으로 개정할 경우 실질 능력에 비례한 과세 부담으로 수평적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둘째, 상품 간 과세체계의 일관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음. 교육세법 시행령은 파생상품등과 관련한 과세표준은 손익을 통산한 순손

18) 조세의 중립성(neutrality of taxation)이란 과세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상황에 변화가 없는 것을 말한다. 즉 세금은 효율적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배분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이 부과되면 조세액만큼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자원이 이전된다는 것 이외에도 세금부담액 이상으로 민간부문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이로 인하여 조세액 이상의 부담, 즉 초과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초과부담은 자산의 보유, 소득의 획득, 재화나 서비스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최적의 상황에서 이탈시키게 됨. 따라서 세금은 초과부담이 영(零)이 되도록, 즉 자원배분에 대하여 완전히 중립적이 되도록 조세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국세법령용어)

익[19]을, 외환에 대해서는 외환매매손익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유가증권과 파생상품등에 대해 과세의 차별성을 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20][21] 개정안과 같이 유가증권에 대해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과세표준으로 설정할 경우 금융상품 간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음.[22]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유가증권의 거래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이 과세표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세수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과세표준 개정 시 금융·보험회사 중 하나인 증권사의 과세표준이 감소하여 해당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세 징수금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23][24][25] 또한, 기획재정부는 유가증권매매

---

19)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통산)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20) 전병욱「금융기관에 대한 교육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31권 제4호, 2014, pp.279~281.

21) 2023년 정기회 당시 동 개정안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표준 중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을 순손익으로 변경하는 형식에 대해 과세의 세수 확보적 측면 이외에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유동수 위원: 그러면 거래적 개념으로 보려면 파생도 거래로 보세요, 거래로. 파생도 그냥 거래로 봐서 과세를 하세요, 이것도 거래로 봐서 과세를 하고. 그러니까 거래 부분에 맞추어서 과세를 한다면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을 할게요. 그런데 어떤 때는 거래로 보겠다고 얘기하고 어떤 거래는 거래가 아니라 손익을 통산해서 보겠다고 그러고 이게 논리가 잘 안 맞아서……. 어쨌든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정부 측에서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과세 여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연구용역을 한 번 발주하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과세가 세수 확보적 측면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11.20. 회의록)

22) 한편 정부는 시행령상에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과세표준을 순손익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파생상품거래와 이를 헤지하기 위한 거래는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고, 파생상품거래 및 파생결합증권의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경우 과세표준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파생상품 거래 및 파생결합증권의 순손익을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서 정의하였다는 입장임. 2009년 세법개정안 개정요강, 기획재정부 자료

익을 순손익과세로 전환 시, 은행·보험사 등의 이자수익·수수료 수익 등도 순손익 과세로 전환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둘째, 교육세의 도입 목적과 현행법상의 운영 실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발생한 과세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세목으로,[26]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까지 금융기관에 부과되던 영업세(수익금액의 1%)에 준하는 세금으로서[27] 도입된 세금의 일종임.

또한 판례[28]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29]으로,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인 순소득(총수입

---

23) 2020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20개 증권사의 재무자료를 분석하여 유가증권 매매손익 통산 시 교육세액 변화분을 분석한 결과 약 300억원 가량의 교육세액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음.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개편에 관한 연구: 과세의 적정성과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영한 외 3인,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24) 은행 또한 전체 교육세 과세표준 179.5조원 중 유가증권의 수익은 7.9조원으로 전과세표준의 4.5%가 유가증권의 수익에 해당함. 개정안에 따라 손익이 통상될 경우 해당 과세표준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보임.

25) 2023년 정기회 당시 동 개정안과 유사한 방식으로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순손익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세수효과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연간 약 1,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를 예상하였음.
○양경숙 위원: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순손익으로 변경할 때 세수 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연간 한 1000억원 정도 됩니다. (2023.11.20. 회의록)

26)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개편에 관한 연구: 과세의 적정성과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영한 외 3인,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교육세법 도입 당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입법 당시 정부 최종안에는 제외되어 있었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재산소유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는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이에 대체하여 교육세를 타당하는 논리에 따른 것이었음.

27) 유재원. 2021. 한국세법학회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토론문. 7p.

28)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289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29)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이나,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과는 다르며,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이 아닌 '수익금액', 즉, 외형 매출 자체를 원칙적 과세대상으로서 판시한 바 있음.

따라서 교육세 최초의 도입취지와 교육세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외형상의 매출액에 대해 과세하여 세수확충을 위한 목적으로써[30] 과세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유가증권의 매각 상환거래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으로 한정하는 것은 동 세목의 현실적인 도입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31]

한편, 최은석의원안(1)은 유가증권 이외에도 파생결합증권, 증권,[32] 파생상품, 외환의 거래로 인한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을 법률상의 '수익금액'에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 시행령 상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규정된 수익금액의 일부를 법률에 상향 입법하는 취지가 있음.

다만, 최은석의원안(1)은 외환의 거래로 인한 손익을 통산한 후의

30) 류민정, 2011. "교육목적세입의 적절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 자료집: 117-144

31) 한편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임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액을 그 과세된 구성요소액만큼 감소시키게 되므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부가가치세 본질에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세제혜택이 아님을 고려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의 매매손익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33]

또한, 형식과 관련하여 박수영의원안은 유가증권의 매각·상환 거래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으로, 최은석의원안은 유가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34]파생상품, 외환의 거래로 인한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손익통산 된 값이 음(-)일 경우 '순손실'에 해당하므로 '순손익'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한편 기획재정부는 교육세는 법인세와 같은 소득(수익-비용)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처럼 수익(외형, 매출)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을 손익 개념으로 전환시 교육세와 법인세의 중복과세 및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내 유가증권 거래에 대한 손익 통산 여부는 담세능력에 부합하는 과세이며,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상품 간의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측면과,

---

33) 기획재정부는 외환매매익 중 외환의 범위에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한 이유는 2011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파생상품 거래손익의 통산범위가 확대되어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중복하여 통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였다는 입장임.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세수감소의 우려, 교육세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며,

판례 또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어떠한 것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지는 그 개념에서 당연히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임을 판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금융·보험업자 과세표준 수익금액 내 공제항목 확대)

□ 윤영석의원안은 현행법 상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 중「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35]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수익, 연회비 수익, 카드 고객의 혜택 제공을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할인, 마일리지 비용 및 제휴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이고,

최은석의원안(2)은 과세표준 계산 시 서민과 영세·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아목인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36] 및「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3에 따라 우대수수료

---

3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3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다.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라.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

마.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종합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바.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지원

율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②-1. 저소득 금융소비자에 대한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려는 부분과 ②-2.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 중 회비 수익, 카드 고객의 혜택 제공을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할인, 마일리지 비용 및 제휴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을 공제 공제를 확대하는 규정으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아.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1. (저소득 금융소비자로부터 파생된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개정안에 따른 과세표준 정의 변경]

구분		법률에서 규정된 과세표준	시행령에서 규정된 과세표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포함되는 것)	① 이자 ② 배당금 ③ 수수료 ④ 보증료 ⑤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1)] ⑥ 보험료[2)] 1)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2) 보험계약의 만기·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 공제	① 수입할인료 ②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③ 신탁보수 ④ 대여료 ⑤ 파생결합증권, 증권, 파생상품의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 외환의 매매손익 ⑥ 수입임대료 ⑦ 고정자산처분익 ⑧ 자산의 평가1)에서 발생한 이익 ⑨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1) 「법인세법 시행령」§75④
	(포함되지 않는 것)	**(윤영석의원안)** **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 중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수익(Ⓐ),** 연회비 수익, 카드 고객의 혜택 제공을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할인, 마일리지 비용 및 제휴사에 지급하는 분담금 **(최은석의원안(2))** **① 서민금융법상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②「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3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수익(Ⓐ)**	①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②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③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④ 서민금융법 제2조제3호에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⑤ ~ ⑫ (이하 생략)

윤영석의원안 중 현행법 상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37]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 중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수익을 공제하는 부분과,

최은석의원안(2) 중 과세표준 계산 시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아목인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38] 및「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3[39]에 따라 우대수수

---

3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3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다.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라.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
마.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종합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바.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지원
사.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아.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료율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규정하려는 부분은,

교육세율 인상 시 서민에게 추가세액 부담 전가 방지를 위해 서민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취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저소득 금융소비자 경제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 중 영세·중소 가맹점[40]에 대한 수수료 수익은 공제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거나,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해당 수익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해당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세·중소 가맹점에게 과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음.

둘째,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금융·보험회사가 고위험·저수익 영역에 해당하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나갈 요인이 될 수 있음.

한편,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서민에게 추가세액 부담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4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전가 방지를 위해 시행령 상 규정되는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에 서민금융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서 수익금액에 공제되는 금액을 명시할 경우, 법률의 예측가능성과 더불어 세제 운영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최은석의원안(2)은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과세표준의 범위가 시행령에서에 규정되어, 법률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교육세율 인상이 서민·소상공인 금융 등에 전가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익금애게서 제외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재도 구체적·개별적 위임 하에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시행령[41]에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필요시 개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4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②-2. (신용카드업자의 카드 고객의 혜택 제공을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 공제)

[개정안에 따른 과세표준 정의 변경]

구분		법률에서 규정된 과세표준	시행령에서 규정된 과세표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포함되는 것)	① 이자 ② 배당금 ③ 수수료 ④ 보증료 ⑤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1)] ⑥ 보험료[2)] 1)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2) 보험계약의 만기·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 공제	① 수입할인료 ②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③ 신탁보수 ④ 대여료 ⑤ 파생결합증권, 증권, 파생상품의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 외환의 매매손익 ⑥ 수입임대료 ⑦ 고정자산처분익 ⑧ 자산의 평가1)에서 발생한 이익 ⑨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1) 「법인세법 시행령」§75④
	(포함되지 않는 것)	(윤영석의원안) **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 중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수익(Ⓐ), **연회비 수익, 카드 고객의 혜택 제공을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할인, 마일리지 비용 및 제휴사에 지급하는 분담금** (최은석의원안(2)) ① 서민금융법상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②「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3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수익(Ⓐ)	①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②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③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④ 서민금융법 제2조제3호에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⑤ ~ ⑫ (이하 생략)

□ 윤영석의원안은 현행법 상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42]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서 연회비 수익, 카드 고객의 혜택 제공을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할인, 마일리지 비용 및 제휴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할인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취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수수료의 정의에 대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법률 및 시행령에서 열거하여 정의하고 있고, 별도로 수수료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개정안과 같이 신용카드업자 가맹점 수수료의 정의를 명확화할 경우 해석상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

4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하 "매출에누리")[43]과 같은 취지의 금액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대법원은 매출에누리의 실질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바에 따른 공급가액의 공제'라고 정의하면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면 법령상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공급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음.[44] 이에 할인금액이 사전에 정해진 바에 따른 공급가액의 공제라는 매출에누리의 실질에 정확히 부합하여 「교육세법」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45]

□ 한편,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고객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금액등(카드업권에는 포인트, 청구할인, 캐쉬백, 사은품 등이 해당)을 수익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46]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는 해당 항목을 다시 수익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 수익과 다르게 비대하게 교육세 과세표준이 도출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47]

---

43)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44)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 58959 전원합의체

45) 조심2024서4889 중 청구법인 주장

46) 한국회계기준원 기준서 1115호,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기업이 고객(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금액을 포함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고객이 기업에 (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같아야 할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나 그 밖의 항목(예: 쿠폰이나 상품권)도 포함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문단 26~30에서 기술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단 50~58에 따라 거래가격을 추정한다(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대한 평가 포함).

□ 다만, 개정안에서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 중 공제하고자 하는 연회비 수익, 마일리지 비용 등이 교육세법 상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일부 판례는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의미하나, 할인금액을 통하여 신용카드회사가 할인분담금 상당의 순자산이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수익금액인 수수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48] 일부 판례는 신용카드업자의 할인금액은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 수익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49]

기획재정부는 교육세가 금융·보험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점을 고려하여 외형과세로 설계된 것을 고려하였을 때, 특정 업권의 상당부분[50] 수익을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47) 여신금융협회 의견

48)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1구합67732 판결, 2022구합54443 판결

49)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 90289

50)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업의 주요 수익 항목은 가맹점 수수료, 현금 서비스 등 이자수익, 할부수수료, 연회비, 기타 수수료라는 입장임

③ (IFRS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을 수익금액으로 규정)

□ 최은석의원안(2)은 현행 교육세법의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 명시적인 기준 없이 개별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51](이하 "IFRS")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정의하려는 것으로 법률상 열거된 과세표준 체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의 쟁점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교육세 불복사건을 살펴본 결과 모두 금융보험업자와 관련된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불복이었음. 이는 현행 과세표준 규정 방식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열거하고 있어, 납세불확실성과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야기함을 의미함.

이에 개정안과 같이 IFRS 기준상에 수익으로 그 정의를 명확화 할 경우, 납세불확실성을 줄이고 교육세 부과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여 교육세를 납부하기 위한 과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52]

---

5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52) 국회입법조사처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의 쟁점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교육세 불복사건 중 금융·보험업자와 관련된 교육세 불복 사례 중 세법 개정을 통해 쟁점 사항이 해소된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 통산 등의 이슈를 제외하면, 수집 사례 중 카드사 할인비용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IFRS상의 기준으로 수익을 정의할 경우 해당 항목이 배제되어, 관련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추가적으로, IFRS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을 수익금액으로 규정할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고객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연회비 수익을 제외한 할인금액(카드업권에는 포인트, 청구할인, 캐쉬백, 사은품등이 해당)을 수익에서 차감하여, 수수료를 인식하게됨. 이는 ②-2에서 논의되었던 것과 유사하게,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 중 연회비 수익을 제외한 할인금액을 차감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수료" 수익을 계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 다만, IFRS상 수익과 세법상 수익은 그 목적이 다르므로 교육세법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53] IFRS는 재무정보를 이용자에게 적절하고 적합하게 제공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반면, 세법상의 수익 등에 대한 기준은 과세소득을 공정·타당하고 투명하게 산출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54]

□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과 같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포괄적 소득개념으로 전환하는 방안 및 회계결산상 수익금액[55]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하되 실질적인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제외하는 방안[5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57]

---

53) 기획재정부 의견

54)추가적으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IFRS에 따라 규정할 경우, 현행 교육세법 체계상 일부 금융상품의 수익금액은 IFRS 기준과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은 매각·상환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파생상품등과 외환에 대해서는 '순손익'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IFRS에 따른 수익 개념과 부합하지 않음.

55) 이익에 연동되는 법인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교육세로 설정하는 방안

56) 정재현, 최기호 「금융세제관련 판례 동향」, 『세무학연구』, 제29권제2호, 2012, p.24.

문 의 처
02)6788-5158

57)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의 쟁점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 10. 10.